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71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추미애·김문수·이성윤

한정애 • 이수진 • 부승찬

김한규 · 김원이 · 전종덕

정성호 · 복기왕 · 서영교

박은정 · 김용만 · 안호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 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 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

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을 "「형법」 제2편제1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④ <u>「형법」 제2편제1장</u>
<u>제2편제1장</u>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